

이 보도자료 상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
바라며, 2014. 8. 4. 조간용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 도 자 료 2014. 8. 1.(금)

공보담당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김창희
전화 02-3270-4302, 4322

자료 문의 : 형사제2부
전화번호 : 02-3270-4309,4329
주책임자 : 형사2부장 이성희

제 목

유명 병원 소유 「ㄱ제약」 의약품 불법리베이트사건 수사 결과
- 227명 적발, 46명 기소[1명 구속], 222명 행정처분 의뢰 -

개 요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「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」 (단장 : 형사2부장 이성희)은 전국 379개 병·의원 의사, 약사 등에게 15억 6,000만원 상당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'ㄱ제약' 영업 본부장 4명과 이들로부터 7,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·약사 등 총 45명을 인지하여 의사 1명을 구속 기소, 나머지 44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
- ※ 의약품 불법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, 약사 104명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함
- 그 외에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 의약품을 무허가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- 2010. 11. 28.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도 함께 처벌하는 '쌍벌제'가 시행된 이후에도 의약품 불법리베이트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음
- 식품의약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앞으로도 불법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도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

1 피의자 및 범죄사실 요지

- 별지 1 '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' 참조

2 주요 범행 수법

● 현금, 상품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

- 신규처방 대가인 '랜딩비', 처방유지·증대를 위한 '선지원금' 등 명목으로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·의원, 약국에 현금,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

-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속칭 "깡"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의사·약사에게 제공

※ 'ㄱ제약'은 소위 "쌍벌제"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의약품 품목별로 11~41%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 수립, 시행

●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

- 'ㄱ제약'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약국 수금 금액의 약 5~10%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

●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무허가 판매 행위

- 'ㄱ제약'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는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·일반의약품을 거래처 의원, 약국에 판매하였고, 이 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

● 불법 면허 차용 의료기관 운영자의 리베이트 수수

- 'ㄱ제약'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'○○의원'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, 대학 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 확인

※ 면허대여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, 사망, 암투병 등으로 명의대여 의사는 처벌할 수 없었음

3 본 수사의 의의 및 향후 계획

● 반복적, 관행적 리베이트 제공 사실 확인

- 'ㄱ제약'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래처 의사, 약사에게 현금,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음

- 'ㄱ제약'은 공정위 적발, 조사,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·의원에 반복적,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였음

-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,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, 제약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엄히 처벌함으로써 제약업계 및 의료인 등에게 경종을 울림

● 부당이익금 환수,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 요청

-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, 수수 의사, 약사에 대한 면허정지, 리베이트 공여 'ㄱ제약'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조치하였음.

●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활동 추진

- “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”은 2014. 3.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이전하여 『식품·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』으로 확대 개편하였고,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, 경찰청,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추진하고 있음
-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

별지 1

주요 피의자별 범죄사실 요지

순번	피의자	피의사실 요지	수사결과
1	A○○(55세) ㄱ제약 前 영업본부장	2010. 1. ~ 2010.10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약 6억 5,6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2	B○○(50세) ㄱ제약 前 영업본부장	2010. 11. ~ 2012. 1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약 4억 1,4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3	C○○(50세) ㄱ제약 前 영업본부장	2012. 2. ~ 2012. 9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약 2억 5,6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4	D○○(45세) ㄱ제약 現 영업본부장	2013. 1. ~ 2014. 5.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약 2억 4,000만원 상당 제공	구공판
5	E○○(59세) ㄱ제약 영업사원	2009. 10. ~ 2014. 5. 의약품 도매상 허가 없이 거래처 병의원, 약국에 조제용 의약품 약 5억원 상당 판매	구공판
6	F○○(35세), 의사	2010.12. ~ 2012. 2. 의약품 처방대가로 14회 걸쳐 현금 약 7,5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 (구속)
7	G○○(47세), 의사	2010.12. ~ 2012. 1. 의약품 처방대가로 14회 걸쳐 현금 약 3,9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8	H○○(56세), 의사	2011. 1. ~ 2013.11. 의약품 처방대가로 38회 걸쳐 현금 약 3,4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9	I○○(52세), 의사	2011. 3. ~ 2013. 8. 의약품 처방대가로 55회 걸쳐 현금 약 2,9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0	J○○(55세), 의사	2011. 3. ~ 2013.10. 의약품 처방대가로 3회 걸쳐 약 2,0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1	K○○(51세), 의사	2011. 3. ~ 2014. 2. 의약품 처방대가로 34회 걸쳐 현금 약 1,9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2	L○○(51세), 의사	2011. 3. ~ 2014. 4. 의약품 처방대가로 38회 걸쳐 현금 약 1,6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3	M○○(55세), 의사	2011. 1. ~ 2014. 3. 의약품 처방대가로 현금(상품권) 약 1,4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4	N○○(60세), 의사	2010.12 ~ 2013.12 의약품 처방대가로 37회 걸쳐 현금 약 1,3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5	O○○(51세), 의사	2011. 1. ~ 2013.12. 의약품 처방대가로 36회 걸쳐 현금 약 1,3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
16	P○○(47세), 약사	2011. 1. ~ 2013. 12. 의약품 사용대가로 31회 걸쳐 현금(상품권) 약 1,800만원 상당 수수	구공판